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5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운영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(안 제15조)

나.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, 문구 수정(안 제16조~제20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9. 26. ~ 10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4. 11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·운영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”으로, “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·의결 후 자동으로 해촉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·운영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16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략) ③ <u>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 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, 구의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인 위원</u> <u>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6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----- ----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·의결 후 자동으로 해촉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
<p>제17조(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) ①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 <u><삭제></u></p>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
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,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

<삭 제>

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9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2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9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한득건 (☎ 3153-8592)